

광주지방법원 2021. 7. 16 선고 2020가단519869(본소), 2020가단550877(반소) 판결

[제3자이의 · 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고(반소피고, 선정당사자)

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

담당변호사 박현웅

피고(반소원고)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

변 론 종 결 2021. 6. 11.

판 결 선 고 2021. 7. 16.

## 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가 주식회사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438호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9. 9. 11.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.
2. 이 법원이 2020카정511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. 6. 5.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.
3.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5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 청 구 취 지

본소 : 주문 제1항과 같다.

반소 : 원고(반소피고, 선정당사자, 이하 '원고'라 한다) 및 선정자 D, E, F, G, H(이하 원고와 위 선정자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'원고 및 선정자들'이라 한다)과 주식회사 C(이하 'C'라 한다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(이하 '이 사건 유체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9. 8. 2.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을 취소한다.

## 이 유

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.

### 1. 기초사실

가. C는 2019. 8. 2.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합계 1억 3,490만 원(원고 : 5,000만 원, 선정자 D, E : 각 1,000만 원, 선정자 F : 2,300만 원, 선정자 G 3,000만 원, 선정자 H : 1,190만 원)을 이자 연 6%, 변제기 2020. 8. 1.로 정하여 차용하였다(이하 당시 작성된 차용증을 '이 사건 차용증'이라 한다). 그 무렵 원고 및 선정자들은 C에게 위 각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고, 2019. 8. 13. 이 사건 차용증에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의 확정일자를 받았다.

나. C는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2019. 8. 2.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유체동산(C의 영업장인 전남 장성군 I 소재)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(이하 '이 사건 양도담보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9. 8. 13.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에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의 확정일자를 받았다.

다. 한편,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C 등을 채무자로 하여 2019. 9. 4. 광주지방법원

2019카합50438호로 유체동산 가압류결정(이하 ‘이 사건 가압류결정’이라 한다)을 받았고,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19. 9. 11.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 내지 5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

### 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(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3다44739 판결 등 참조).

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(2019. 9. 11.)을 하기 전에 이미 C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(2019. 8. 2.)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.

### 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#### (1) 피고의 주장

C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과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, 위 양도담보계약은 무효이다.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위와 같이 무효인 이상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제3자이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.

#### (2) 판 단

(가) 당사자 일방이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(대법원 2016. 6. 9. 선고

2015다256732 판결,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).

(나)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이는 다음의 사정에 의해 뒷받침된다.

① 비록 선정자 E, D이 2019. 11. 5. 피고의 대표이사인 J과 전화로 통화할 당시 ‘C의 대표자인 K이 가압류해제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C에 돈을 빌려주었고, 차용증 및 양도담보계약서 등을 보지 못하였다’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만(을7),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선정자 E, D은 가압류해제비용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 분명하므로, 단지 이들이 이 사건 차용증 및 양도담보계약서 등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 통정허위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.

②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전에 피고가 C 등을 채무자로 하여 2019. 7. 25. 광주지방법원 2019카단51486호로 유체동산 가압류결정(이하 ‘선행 가압류결정’이라 한다)을 받았으나 이에 따른 가압류집행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(2019. 8. 5. 해방금액의 공탁으로 그 무렵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, 갑6, 을6 참조),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거나 인도를 받는 데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.

③ 피고의 대표이사인 J은 C의 대표자인 K 등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허위로 이 사건 차용증과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위 K 등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으나, 2020. 6. 17. 광주지방법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(갑6).

(다) 결국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.

### 3.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

#### 가. 피고의 주장

피고는 C에 대하여 2019. 1. 21.부터 같은 해 4. 15.까지 공급한 자동차부품 등의 대금 670,465,187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(이하 ‘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’이라 한다)을 가지고 있다.

그런데 C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주식회사 L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가 모두 부도처리 되었는데도,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유체동산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사해행위를 하였고 C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. 따라서 피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취소를 구한다.

#### 나. 피보전채권의 존부

(1)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므로(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다25978 판결 등 참조),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기각해야 한다(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다25251 판결 등 참조).

(2) 피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증거로 을2 내지 4를 제출하고 있으나,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이는 다음의 사정에 의해 뒷받침된다.

① 을2(고객별 할인어음계좌내역)에는 모두 L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내역만 기재되어 있으므로, 이를 근거로 피고가 C에 대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.

② 을3(결재요청서)은 피고가 그 수신인을 C로 하여 각 결재요청서에 기재된 금액의 지급을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에 불과하므로, 이 역시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.

③ 을4(거래명세서)에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C로 기재되어 있으나, 그 문서 어디에도 C의 날인이나 물품을 수령한 담당자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, 위 거래명세서에 대해 C의 승인이나 동의를 있었다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위 거래명세서만으로 피고가 C에 대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.

④ 실제로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5120호로 주식회사 L(이하 'L'라 한다) 및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(L에 대한 청구금액 : 1,133,113,381원 및 그 지연손해금, C에 대한 청구금액 : 위

L에 대한 청구금액 중 599,195,057원 및 그 지연손해금) 지급청구 사건에 대해 제1심은 2021. 6. 24. 피고의 L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(갑9 참조), 위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피고가 L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 중 일부로 보이고, 이는 피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아님을 알 수 있다.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도 어렵다.

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결제와 관련하여 L가 발행한 어음만을 교부받았을 뿐이고(을2), 단지 C와 L의 본점 주소가 일치한다거나 C의 대표이사가 그 이전에 L의 임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 등만으로 L와 C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보기도 어려우므로, 피고가 C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.

#### 다. 소 결

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, 즉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, 사해행위나 사해의사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(사해행위 취소 청구)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#### 4. 결 론

원고의 본소 청구는 받아들이고,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.

판사 정영호

선 정 자 명 단

- 1. A
- 2. D
- 3. E
- 4. F
- 5. G
- 6. H
- 끝.

